#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춘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00

발의연월일: 2021. 3. 15.

발 의 자:최춘식·지성호·정희용

이종배 • 이명수 • 김성원

윤재옥 · 황보승희 · 김희곤

박대수 · 권영세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은 특별한 인사검증시스템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.

이로 인해 낙하산 인사와 부실경영 논란 등 지방공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영 입과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화된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 및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 미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8조의2 신설 및 제76조제2항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4항제1호 중 "제58조의2"를 "제58조의3"으로 한다.

제58조의2를 제58조의3으로 하고,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조의2(인사청문 실시) ① 제5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

- 이 사장을 임명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위한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76조제2항 전단 중 "제58조의2"를 "제58조의2, 제58조의3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~ ③	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	4
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	
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	
연임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다	
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	
한다.	
1. <u>제58조의2</u> 에 따른 경영성과	1. <u>제58조의3</u>
계약의 이행실적	
2.・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⑤ ~ ⑧ (생 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58조의2(인사청문 실시) ① 제5
	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
	의 장이 사장을 임명하려면 미
	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
	쳐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의
	실시를 위한 절차 및 운영 등
	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
	로 정한다.
제58조의2(사장과의 경영성과계	제58조의3(사장과의 경영성과계
약) (생 략)	약) (현행 제58조의2와 같음)

제76조(설립·운영) ① (생 략)	제76조(설립·운영) ① (현행과 같
	승)
② 공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	②
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, 제5	
3조제1항, 제56조제1항 및 제3	
항, 제57조, 제58조, <u>제58조의2</u> ,	<u>제5</u> 8조의2 <u>,</u>
제59조부터 제63조까지, 제63조	제58조의3
의2부터 제63조의8까지, 제64	
조, 제64조의2, 제65조, 제65조	
의2, 제66조, 제66조의2, 제68	
조, 제69조, 제71조, 제71조의2	
부터 제71조의4까지, 제72조 및	
제73조, 제75조의2부터 제75조	
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	
경우 "공사"는 "공단"으로, "사	
장"은 "이사장"으로, "사채"는	
"공단채"로 본다.	<u>.</u>